

이리팔봉초등학교 학교 규칙 개정안

제정 1998. 11. 22 팔봉초 제389호
개정 2000.12.01.
개정 2001.09.21.
개정 2006.02.16. 팔봉초 제 223호
개정 2011.04.27.
개정 2012.04.04.
개정 2016.02.16.
전면 개정 2021.03.01.
개정 2022.10.05.
개정 2023.4.12.
전부 개정 2024.04.0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초등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교는 이리팔봉초등학교라 칭한다.

제3조(위치) 본교는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31길 10에 둔다.

제2장 수업연한·학년·학기 및 휴업일

제4조(수업연한) 본교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단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제5조(학년, 학기)

- ① 본교 학생의 진급이나 졸업은 학년제로 한다.
- ② 본교의 학기는 매 학년도를 두 학기로 나누되, 제1학기는 3월 1일부터 본교의 수업일수·휴업일 및 교육과정 운영 등을 고려하여 이리팔봉초등학교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한 날까지, 제2학기는 제1학기 종료일 다음 날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한다.

제6조(휴업일)

- ① 본교의 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공서의 공휴일
 2. 여름방학
 3. 겨울방학
 4. 학년말 방학

- 5. 주5일수업제 운영에 따른 토요일휴업일
 - 6. 학교장 재량휴업일(개교기념일 등)
- ② 학교의 휴업일은 학교장이 매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 ③ 제①항 제2-4호의 방학 기간은 제10조의 수업일수를 이수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장이 정하여 시행한다.
- ④ 제①항 각 호 외에 비상재해 기타 급박한 사정이 발생할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지체 없이 관할청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학급편제 및 학생정원

제7조(학급수) 학급편성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급수로 한다.

제8조(학생정원)

- ① 학생 정원은 당해년도 학생수용계획에 의하여 매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정하여 통보한 학생정원으로 한다.
- ② 취학의무를 유예 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의 장기결석을 한 자에 대하여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한다.

제4장 교육과정·수업일수·평가·과정 수료 및 졸업 등

제9조(교육과정)

- ① 학교·학년·학급 교육과정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고, 교육감이 제시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 및 전북특별자치도익산교육지원청의 주요 계획을 반영하여 학교 실정에 맞게 편성한다.
- ② 학교장은 매 학년 초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조직을 구성한다.
- ③ 특수학생과 관련하여 개별화교육프로그램을 작성·운영하고, 이를 학교수준교육과정으로 인정한다.

제10조(수업일수)

- ① 본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 이상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천재지변, 연구학교 또는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10분의 1의 범위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수업운영)

- ① 수업이 시작되는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
- ②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인근학교와 **공동교육과정**을 실시하거나 학년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 ③ 학교장은 **방송프로그램 및 교육상 필요한 경우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 ④ 학생의 흥미, 특성과 계절 등을 고려하고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 및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에 따라 학교 간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⑤ 학교장은 교육의 본질 추구와 학생 개개인의 특기 신장 등을 위하여 교과활동 외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출결)

- ①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②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천재지변, 전염병 등
 2.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3.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4. 체험학습
 5.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
 6. 생리결석 시 출석인정 근거 규정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의 조항 적용에 의거 생리통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어려운 학생에 한하여 월 1회, 학부모 의견서를 통하여 생리결석이 확인된 학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7.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③ 지각, 조퇴, 결과는 결석에 준하여 처리하며, 개근은 해당 학년 동안 1회의 결석(또는 지각, 조퇴, 결과)도 없는 경우이다.
- ④ 기타 출결에 관한 사항은 당해연도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3조(평가)

- ① 학교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에 평가 기본 계획을 포함,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시행한다.
- ② 제①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교환학습 및 체험학습)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① 개인교환학습은 국내에 한하여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출석인정한다.
- ② 관찰, 조사, 수집, 현장견학, 답사, 문화 체험 등의 일반 교외 체험학습 출석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하며,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로 한다.
- ③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다.
- ④ 교외체험학습 운영은 1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 시 반일(중식 기준 오전, 오후)도 운영이 가능하다. 단, 반일 운영 2회 시, 1일로 환산하며, 중식 전, 후가 해당일의 수업시수 전체가 될 경우는 1일로 본다. 단, 가정학습은 반일 운영이 불가하다.
- ⑤ 교외체험학습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하도록 하되, 가급적 평가를 실시하는 날은 실시하지 않는다.
- ⑥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한다.
- ⑦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한다.
- ⑧ 이 외 체험학습 및 가정학습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장이 이를 시행한다.

제15조(과정수료 및 졸업)

- ① 학교장은 학생의 교육과정 이수정도 등을 평가하여 학생의 각 학년 과정의 수료를 인정한다.
- ② 학생의 각 학년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 ③ 학교장은 본교의 전 교육과정을 수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졸업장을 수여한다.

제5장 입학·전학·재취학·취학 유예

제16조(입학자격) 본교의 제1학년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① 초·중등교육법시행령 17조에 의거 본교 학구내 자로서 동장이 발행하는 취학통지를 받은 자
- ②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재외국민의 자녀
- ③ 학교장의 입학 허가를 받은 자

제17조(입학 시기 및 조기입학)

- ① 입학 시기는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 ② 학생의 재취학 또는 편입학의 시기는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수시로 할 수 있다.
- ③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8.05.27. 공포)에 따라 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

의 연령이 만 5세에 달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장에게 조기입학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취학유예 및 입학연기)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008.5.27공포)에 따라 만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에 입학할 원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보호자는 자녀 또는 아동의 연령이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장에게 입학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7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②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 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학급 담임은 가정 방문을 통해 확인한다.

제20조(전·입학)

- ① 해당 학년도의 의무취학아동은 매년 관할 동장으로부터 통보되는 취학아동명부에 등재된 아동을 제1학년 신입생으로 한다.
- ② 아동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학교가 아닌 초등학교에 그 아동을 입학시키려는 경우에는 그 입학시키려는 학교장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 ③ 학교장은 제②의 규정에 의하여 입학할 승낙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아동의 거주지관할 읍·면·동의 장과 지정된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초등학교의 학생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려는 경우 그 학생의 보호자는 재학 중인 학교장과 해당 학생이 전입한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의 장으로부터 전학할 학교로 지정받은 학교장에게 각각 그 전학하려는 학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전학하려는 학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하여야 하며, 해당 학생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주소지의 변경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 ⑤ 학생이 전학한 때에는 전·입학한 학교장은 전출한 학교장에게 당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의 송부를 요청하고, 전출한 학교장은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⑥ 학교장은 학생의 학교생활 부적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생의 교육환경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 1인의 동의를 얻어 교육장에게 당해 학생의 전출을 추천할 수 있다.
-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이나 학생(이하 “귀국학생등”이라 한다)의 보호자는 거주지가 속하는 학구 안에 있는 초등학교장에게 귀국학생등의 입학 또는 전학을 신청할 수 있다.
 1.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또는 학생
 2. 재외국민의 자녀인 아동 또는 학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인 아동 또는 학생

4. 외국인인 아동 또는 학생

5. 그 밖에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하기 전에 국내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국내에 학적이 없는 등의 사유로 입학 또는 전학 절차를 거칠 수 없는 아동 또는 학생

⑧ 제⑦항의 신청을 받은 초등학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학생등의 보호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게 한다.

1. 출입국에 관한 사실이나 외국인등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거주사실에 대한 인우보증서 등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⑨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은 제⑦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귀국학생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 또는 진학할 수 있다.

⑩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아동이나 학생(이하 “다문화학생”이라 한다)은 제15조제1항 및 제19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문화학생이 특별학급이 설치된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나 전학할 수 있다.

제21조(취학의무의 면제·유예)

① 취학 의무를 면제 또는 유예받으려는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는 해당 아동이나 학생이 취학할 예정이거나 취학 중인 학교장에게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 신청을 받은 학교장은 의무교육관리위원회 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다.

③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나 학생의 보호자가 행방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장이 그 사유를 확인한 후 의무교육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제②항 또는 제③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제②항 및 제③항에 따라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보호자, 읍·면·동의 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자에 대한 통보의 경우 보호자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취학 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⑦ 제⑥항 단서에 따라 다시 유예하거나 유예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유예절차는 제①항부

터 제⑤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2조(유예자의 학적관리)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다.
 1. 입학 이후 취학 의무를 유예받은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 장기 결석한 학생
-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기결석을 한 자로서 정원외로 학적이 관리되고 있는 자 또는 취학의무의 면제나 유예결정을 받은 자가 다시 학교에 다니고자 하거나 취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결과에 따라 학년을 정할 수 있다.

제23조(재취학)

- ① 의무교육대상자가 가족의 이민, 공무원이거나 상사주재원인 부모의 해외 파견이나 부모의 해외 취업 등에 의해 전 가족이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 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는 경우는 유학으로 인정한다.(단, 부 또는 모의 공무상 해외파견 및 이에 준하는 경우는 부·모 부양의무자 중 1인 이상과 함께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할 경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인정유학으로 간주한다.
 1. 의무교육대상자가 부모와 함께 외국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경우
 3. 인정유학 사유에 해당되어도 수학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③ 인정유학은 면제처리하며 6개월(1학기) 이상은 유학기간을 반영하여 해당학년에 재취학처리한다. 미인정유학은 출국일 이후부터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 후 최초결석일로부터 연속으로 3분의 1이상 결석한 시점에서 정원외 학적관리가 가능하다.
- ④ 정원외 학적관리된 당해 학년도에는 원칙적으로 재취학을 허용할 수 없다. 또한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생의 학업공백이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일 경우에는 학년 배정 시 수업일수 3분의 2 이상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에는 재취학이 불가능하다.
- ⑤ 미인정유학의 경우 해당국가의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수학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에 한하여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를 통한 학년배정이 가능하다.
- ⑥ 귀국학생 학적서류는 교육부 홈페이지에 탑재된 외국 학력인정학교에 한하여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 확인 없이 학교장 발급서류로 같음하나, 미탑재 학교일 경우 민원인이 해당국의 정규교육기관임을 소명하거나 학적서류에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 확인이 필요하다.
- ⑦ 재취학에 관련된 기타 사항 및 절차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편입학 및 재입학 업무 시행 계획」에 따른다.

제24조(의무교육관리위원회)

-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둔다.
 1. 취학 의무의 면제 및 유예의 결정에 관한 심의
 2. 미취학 아동 또는 학생의 보호자 내교 시 미취학 사유 확인
 3.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전학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학에 관한 사항의 심의
 4. 그밖에 취학의무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 ② 의무교육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인 학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위원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본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소속된 경찰 공무원
 2. 본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동에 소속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3. 본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아동보호 기관 관계자
 4. 학부모
- ③ 그 밖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장 조기진급 조기졸업·상급학교 조기입학

제25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 ① 학교장은 재능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수업연한의 단축으로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인정하거나 상급학교의 조기입학을 위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대상자는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위원회가 실시하는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에 의하여 학교장이 이를 선정한다.
- ③ 조기진급이란 1학년에서 3학년, 2학년에서 4학년, 3학년에서 5학년, 4학년에서 6학년으로 진급함을 말한다.
- ④ 조기졸업이란 5학년에서 교과목별 조기이수에 의하여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졸업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 ⑤ 교과목별 조기이수 대상자가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 조기졸업 하고자 하는 경우 초등학교는 5학년에서 조기졸업 할 수 있다.

제26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 ① 심신 발달 및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 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각 호 중 두가지 이상을 동시에 만족한 경우에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초 1·2학년은 국어, 수학, 즐거운 생활)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두 가지 이상의 표준화된 지능검사에서 지능지수(IQ)가 140 이상인 자
3. 국가기관(중앙행정부처)이 주관 또는 주최한 전국대회에서, 학교장의 추천과 지역 예선을 거쳐 3등 이내 입상한 자 또는 국제올림픽아드에 국가 대표로 참가한 자

- ②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평가 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절차를 따른다.
1. 학생과 학부모의 신청에 의하거나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후 학급 담임 추천
 2. 제②항의 선정 기준 고려
 3.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사정
 4. 학교장 선정

제27조(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평가)

- ① 학습방법은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의 조기이수 해당 학년의 교사들의 지도 아래 대상 학생이 주도적이며 자율적으로 학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학교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 학생의 학습을 최대한 지원한다.
- ③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는 진급 또는 상급학교 조기진학에 지장이 없는 기간 중에서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하는 시기에 실시하되 가급적 11월 이내에 실시한다.
- ④ 조기진급 대상자 및 조기졸업 대상자는 진급 대상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조기이수 인정을 받아야한다.
- ⑤ 해당 학년도 교육과정 교과목의 이수 기준은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가 정하는 평가에 응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 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를 넘어야 한다.
- ⑥ 과목 이수는 조기진급·졸업·진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 이수한 것으로 한다.
- ⑦ 조기진급자가 진급학년에서 심한 부적응 현상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과 보호자의 희망사항이나 동의를 받아 다음 학년도 초의 60일 이내에 환원 조치할 수 있다.

제28조(상급학교 조기 입학 자격 부여)

- ① 제26조의 선정대상자 기준에 해당하여 상급학교 조기 입학에 희망하는 학생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 ② 학교장은 심신 발달 및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정서가 안정되고 사회적응력이 양호한 자로서 다음 1, 2호를 모두 만족한 경우에 중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조기입학 자격 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1.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의 학업성취가 우수한 자.
 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6조 제2항에 따라 상급학교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응시 가능한 자격을 갖춘 경우
- ③ 상급학교 조기입학 신청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 후 7일 이내에 교과목별 평가를 실시한다.
-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부여할 때에는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 ⑤ 상급학교 조기입학 전형 응시 신청자를 대상으로 6학년 교육 과정에 편성된 전교과목에 대한 평가

를 실시하여 해당 교과목 중 과반수이상의 교과목에서 학업성취도가 만점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⑥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과한 학생은 희망한 상급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있다.
- ⑦ 상급학교 입학 전형에 합격을 하면 조기졸업으로 인정한다.

제29조(조기진급·졸업·진학을 위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위원회)

-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졸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교과목별 이수인정 기준의 결정
 - 2.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방법의 결정
 - 3.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도구의 제작 또는 선정
 - 4.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 및 성적 산출
 - 5. 기타 교과목별 조기이수 인정평가와 관련된 업무
- 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교감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교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 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 ⑤ 제①항부터 제④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30호(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① 조기진급·졸업·평가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25조 제①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 ② 제25조 제①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①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31조(조기진급 등 대상자의 업무처리)

- ① 조기진급 등 대상자가 속한 학급의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정리, 성적 처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② 조기이수 대상자의 해당 학년 교과목의 성적 처리는 성적을 적지 않고 ‘이수인정’으로 기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이 규정 이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학교장이 따로 결정한다.

제7장 수익자부담 경비의 징수

제32조(수익자부담 경비의 징수)

- ①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체험학습비, 수학여행비, 방과후교육활동비, 청소년단체 활동비, 급식비 등을 수익자부담으로 징수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의 수익자부담경비를 징수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장 학생포상 및 학교생활규정 운영

제33조(포상)

- ① 학교장은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이 우수한 자, 근면성이 뛰어난 자, 선행·효행·봉사활동 등으로 타인의 모범이 되는 자, 소질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그 실적이 두드러진 자 또는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 ② 포상에 대한 세부 규정은 별도 포상 규정에 의한다.

제34조(학생생활규정)

- ① 학교장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주적 학습 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과 준법의식을 함양하여 법치주의 사회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학생생활과 관련한 제반사항을 별도로 제정·운영 한다.
- ② 학교장은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학생 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내용은 학교생활규정에 따른다.

제9장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제35조(학생자치활동)

- 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고, 지도력과 자치능력을 육성하여 본교의 자율적 발전을 도모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교어린이회 및 학급어린이회를 둔다.
- ② 학교장은 어린이회 활동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운영한다.

제36조(학생자치활동의 운영)

- ① 학생자치활동은 학생의 자율적, 자발적인 운영이 되도록 한다.
- ② 학생자치활동은 지도교사의 지도를 받아 활동하도록 한다.
- ③ 학생자치활동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학교표준교육비에서 지원한다.

제10장 학업중단 예방 및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제37조(학업중단예방위원회) ① 학업중단위기 학생 지원 및 학업중단숙려제(이하 이 조에서 “숙려제”라 한다) 운영을 위하여 학업중단예방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② 학업중단예방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38조(학업중단숙려제) ① 학교장은 학업 중단 징후가 발견되거나 학업 중단의 의사를 밝힌 학생에게 학업 중단에 대하여 충분히 생각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학교장은 그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을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으로 선정한다.

1. 학교에 학업중단 의사를 밝히거나 유예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2. 검정고시 응시, 홈스쿨링, 평생교육시설·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학습하기 위해 학업중단 의사를 표현한 학생
3. 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진로·진학 담당교사 등의 협업을 통해 학업중단 징후가 있다고 진단한 학생
4. 학업중단 예방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
5. 미인정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6.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위기 징후가 발견되어 학교장이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학업중단숙려제 참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연락 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인해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2. 질병 치료, 발육부진, 사고, 해외 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 등으로 부득이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3. 학교폭력 등으로 출석이 정지되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된 학생
4. 그 밖에 학교장이 학교에서 학업중단숙려제 참여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학생

④ 학업중단 숙려 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숙려 기간은 최소 1주 이상, 최대 7주 이하로 운영한다.
2. 숙려제는 주 단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숙려 기간 내 주말,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 등을 숙려 기간에 산입한다.(단, 평가 기간 제외)
3. 숙려제 실시 횟수 및 세부 운영 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다.

제11장 교육활동보호

제39조(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교육활동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시행한다.

제40조(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 ①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알게 된 경우 즉시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기타 교육활동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활동보호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12장 특수교육 운영

제41조(특수학급의 편성)

① 학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학급 인가에 따라 특수학급을 편성·운영한다.

② 학교장은 매학년도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제42조(차별의 금지)

①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특수아동”이라 한다)의 교육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특수아동 및 그 보호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수교육법 제 28조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에서의 차별

2. 수업 참여 배제 및 교내·외 활동 참여 배제

3. 개별화교육지원팀의 참여 등 보호자 참여에서의 차별

4. 입학전형 절차에서 장애로 인하여 필요한 수험편의의 내용을 조사·확인하기 위한 경우 외에 별도의 면접이나 신체검사를 요구하는 등 입학전형 과정에서의 차별

5. 입학·전학 과정에서 비장애학생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는 보증인 또는 서약서 제출을 요구

③ 교육활동 평가에서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시 장애학생 평가조정제를 운영한다.

④ 학교장은 장애인의 능력과 특성에 맞는 특수교육을 실시한다.

⑤ 학교장은 본교 교직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특수아동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공감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43조(통합교육) ① 특수아동 또는 그의 보호자가 통합교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거쳐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② 통합교육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수교육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 편의시설을 갖춘다.

제44조(개별화교육) 개별화교육계획의 효과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당해 학교에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45조(장애학생 인권보호)

① 장애학생의 인간존엄권, 발달권, 보호권, 평등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한다.

②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장애이해교육 및 장애인권 감수성 교육을 실시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교육 및 성교육을 실시한다.

③ 장애를 비하하는 언어적 표현과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모든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특수아동 관련 학교폭력 사안 처리 시 특수교육 전문가를 참여시켜 학생의 의견 진술

기회 확보 및 진술을 조력할 수 있고,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의 조치별 적용 기준에 따라 피해학생이 특수교육대상학생인 경우 일반학생대상 학교폭력 사안에 적용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이상 높은 수위의 징계를 적용할 수 있다.

제13장 학교규칙 제·개정

제46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 ①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 “규정개정심의위원회”로 (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학생 위원은 전체의 4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 임기는 해당 학년도 말일까지로 한다. 단, 다음 학년도 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을 때는 새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 ⑤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와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학칙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본교 재직 교원의 과반수가 규칙의 개정 요구하는 경우
 2. 본교 학생회(어린이회)가 규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3.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가 학칙의 개정을 요구하는 경우
 4. 관련 법령이나 지침의 개정 또는 변경으로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② 제①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상시개정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학기말 또는 새 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으로 하며, 제①항 제4호에 따른 발의 시기는 예외로 한다.

제48조(개정안 의결·공포)

- ① 학교장은 규칙의 제정 및 개정의 취지와 주요 사항 등을 학교구성원(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7호(학업 중단 예방에 관한 사항 제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는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개정안에 반영한다.
- ② 학교장은 교무회의 심의를 거친 최종 개정안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 ③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④ 학교운영위원회는 학칙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가결된 최종안을 확정하여 학교장에게 보낸다.
- ⑤ 학교장은 넘겨받은 개정 규칙을 지체 없이 공포한다.

제49조(연수 및 교육)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개정 규칙에 관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 본교의 누리집이나 가정통신문 등을 통하여 개정 규칙을 안내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학교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제14장 기타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제51조(기타법령의 적용) 이 학교규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 칙

제1조 이 학칙은 공포한 날(1998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칙 1차 개정안은 개정일(2000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학칙 2차 개정안은 개정일(2001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학칙 3차 개정안은 개정일(200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학칙 4차 개정안은 개정일(201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 학칙 5차 개정안은 개정일(2012년 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제7조 학칙 6차 개정안은 개정일(2016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8조 학칙 7차 개정안은 개정일(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9조 학칙 8차 개정안은 개정일(2022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10조 학칙 9차 개정안은 개정일(2023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11조 학칙 10차 개정안은 개정일(2024년 4월 00일)부터 시행한다.